

□ 변경 대비표

신한 BNPP Tops 아름다운 SRI 증권 투자신탁 제1호[주식]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- 1. 종류 수익증권의 신설
- 2. 기금 조성 비율 인상 및 신설
- 3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
항목	변경전	변경후
1. 종류 수익증권의 투자자격 변경 & 신설	<p>< 제1부>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p> <p>< 제2부>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p> <p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p> <p>11. 매입, 환매 및 전환기준</p> 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< 종류 명칭 및 가입자격 ></p> <p>< 신설 ></p>	<p>< 제1부>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p> <p>< 제2부>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p> <p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p> <p>11. 매입, 환매 기준</p> 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< 종류 명칭 및 가입자격 ></p> <p>- 종류 A 수익증권, 종류 B 수익증권, 종류 C-i 수익증권</p> <p>투자자격(추가기술) <u>사회공헌활동과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기부</u>에 동참하고자 하는 투자자</p> <p>- 종류 A-ch 수익증권</p> <p>투자자격: <u>불우아동을 위한 기부</u>에 동참하고자 하는 투자자</p> <p>- 선취판매수수료: 납입금액의 0.51%</p> <p>- 운용보수(연): 연 0.79%</p> <p>- 판매보수(연): 연 0.99%</p> <p>- 신탁보수(연): 연 0.03%</p> <p>- 환매수수료: 없음</p> <p>- 종류 A-ds 수익증권</p> <p>투자자격: <u>장애인을 위한 기부</u>에 동참하고자 하는 투자자</p> <p>- 선취판매수수료: 납입금액의 0.52%</p> <p>- 운용보수(연): 연 0.79%</p> <p>- 판매보수(연): 연 0.98%</p> <p>- 신탁보수(연): 연 0.03%</p> <p>- 환매수수료: 없음</p>
2. 기금 조성 비율 인상 및 신설	<p>< 제2부>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※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및 판매회사보수의 1.7%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고, 공익사업지원을 위해 지급합니다.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후원기금을 조성하며,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 기금사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.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의 1.7%에 해당하는 금액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의 1.7%에 해당하는 금액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위의 방법으로 조성된 기금을 사회공헌 활동과 공익사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.</p> <p>1. 공익재단에의 기부 및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</p> <p>2. 공익성 광고를 위한 비용 지급</p> <p>3. 기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 등</p> <p>< 신설 ></p>	<p>< 제2부>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※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종류 수익증권별로 집합투자업자보수 및 판매회사보수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고, 아래와 같이 종류 수익증권별로 해당 공익사업지원을 위해 지급합니다.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<u>종류 수익증권별 후원기금을 조성하며,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보수율에 아래의 기금 조성율을 반영하여</u>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 기금사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의</u>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.</p> <p>1. <u>종류 A 수익증권, 종류 B 수익증권, 종류 C-i 수익증권, 종류 A-ch 수익증권, 종류 A-ds 수익증권</u></p> <p>A. 집합투자업자가 수취하는 보수 중 10%에 해당하는 금액</p> <p>B. 판매회사가 수취하는 보수 중 10%에 해당하는 금액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위의 방법으로 <u>종류 수익증권별로 조성된 기금</u>을 사회공헌활동과 공익사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.</p> <p>1. <u>종류 A 수익증권, 종류 B 수익증권, 종류 C-i 수익증권</u></p> <p>A. 공익재단에의 기부 및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</p> <p>B. 공익성 광고를 위한 비용 지급</p> <p>C. 기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 등</p> <p>2. <u>종류 A-ch 수익증권</u></p> <p>A. <u>불우아동을 위한 기부 및 관련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</u></p> <p>3. <u>종류 A-ds수익증권</u></p> <p>A. <u>장애인을 위한 기부 및 관련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</u></p>
3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제2부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(신설) 종류 수익증권(A-ch 및 A-ds)의 신설

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- 1. 종류 수익증권의 신설
- 2. 기금 조성 비율 인상 및 신설

항목	변경전	변경후
1. 종류 수익증권의 신설	<p>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</p> <p>< 종류 명칭 및 투자자격 ></p> <p>< 생략 ></p> <p>< 신설 ></p>	<p>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</p> <p>< 종류 명칭 및 투자자격 ></p> <p>- 종류 A 수익증권, 종류 B 수익증권, 종류 C-i 수익증권</p> <p>투자자격(추가기술) <u>사회공헌활동과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기부</u>에 동참하고자 하는 투자자</p> <p>< 현행과 동일 ></p> <p>- 종류 A-ch 수익증권</p> <p>투자자격: <u>불우아동을 위한 기부</u>에 동참하고자 하는 투자자 (선취판매수수료 있음)</p> <p>- 종류 A-ds 수익증권</p> <p>투자자격: <u>장애인을 위한 기부</u>에 동참하고자 하는 투자자 (선취판매수수료 있음)</p>

<p>1. 종류 수익증권의 투자자격 신설 (계속)</p>	<p>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< 생략 > 1. ~ 3. < 생략 > <신설></p>	<p>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< 현행과 동일 > 1. ~ 3. < 현행과 동일 > 4. <신설> 종류 A-ch 수익증권 5. <신설> 종류 A-ds 수익증권</p>
<p>1. 종류 수익증권의 투자자격 신설 (계속)</p>	<p>제39조 (보수) ① ~ ② < 생략 > ③ < 생략 > 1.~3. < 생략 > <신설></p>	<p>제39조 (보수) ① ~ ② < 현행과 동일 > ③ < 현행과 동일 > 1.~3. < 현행과 동일 > 4. <u>종류 A-ch 수익증권</u>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7.90]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9.90]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30] 5. <u>종류 A-ds 수익증권</u>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7.90]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9.80]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30]</p>
<p>1. 종류 수익증권의 투자자격 신설 (계속)</p>	<p>제40조 (판매수수료) ① < 생략 > ② 1. ~ 3. < 생략 > <신설></p>	<p>제40조 (판매수수료) ① < 현행과 동일 > ② 1. ~ 3. < 현행과 동일 > 4. <u>종류 A-ch 수익증권: 납입금액의 100분의 0.51</u> 5. <u>종류 A-ds 수익증권: 납입금액의 100분의 0.52</u></p>
<p>1. 종류 수익증권의 투자자격 신설 (계속)</p>	<p>제41조 (환매수수료) ① < 생략 > ② < 생략 > 1. 종류 A 수익증권, 종류 B 수익증권: 없음 2. < 생략 ></p>	<p>제41조 (환매수수료) ① < 현행과 동일 > ② < 현행과 동일 > 1. 종류 A 수익증권, 종류 B 수익증권, 종류 A-ch 수익증권, 종류 A-ds 수익증권: 없음 2. < 현행과 동일 ></p>
<p>2. 기금 조성 비율 인상 및 신설</p>	<p>제39조의2 (기금의 조성 및 사용) ①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회공헌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조성하며,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 기금사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. 집합투자업자가 수취하는 보수 중 1.7%에 해당하는 금액 2. 판매회사가 수취하는 보수 중 1.7%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사회공헌활동과 공익사업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. 1. 공익재단에의 기부 및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2. 공익성 광고를 위한 비용 지급 3. 기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 등 <신설></p>	<p>제39조의2 (기금의 조성 및 사용) ①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<u>종류 수익증권별 사회공헌기금</u>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조성하며,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보수율에</u> 아래의 기금 조성율을 반영하여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 기금사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의</u>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. <u>종류 A 수익증권, 종류 B 수익증권, 종류 C-i 수익증권, 종류 A-ch 수익증권, 종류 A-ds 수익증권</u> A. 집합투자업자가 수취하는 보수 중 10%에 해당하는 금액 B. 판매회사가 수취하는 보수 중 10%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의한 <u>종류 수익증권별</u>로 조성된 기금은 사회공헌활동과 공익사업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. 1. <u>종류 A 수익증권, 종류 B 수익증권, 종류 C-i 수익증권</u> A. 공익재단에의 기부 및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B. 공익성 광고를 위한 비용 지급 C. 기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 등 2. <u>종류 A-ch 수익증권</u> A. 불우아동을 위한 기부 및 관련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3. <u>종류 A-ds 수익증권</u> A. 장애인을 위한 기부 및 관련 공익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</p>